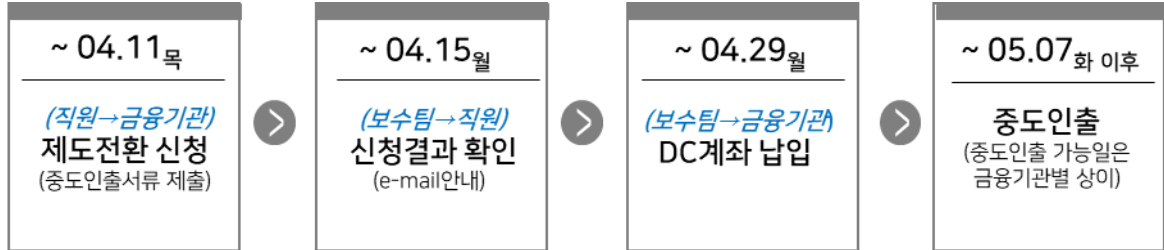


2024년 1차 퇴직연금 중도인출 안내

□ 제도전환 일정



□ 주요내용

구분	내용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DB형, 비율혼합형(99:1) 또는 kt혼합형(DC+DB) 가입자 중 법정 중도인출 사유를 충족하는 직원 - 복지기금 연대보증 대부자는 보증보험으로 대체 또는 전액 상환 시 전환 가능 (연대보증 대부 관련 문의 : support@kt.com으로 사번, 성명, 문의내용 발송) ☞ 퇴직연금 가입유형 확인 : ERP(HR)>개인업무>급여>조회>퇴직금>퇴직연금가입내역 	
전환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DC형 또는 kt혼합형 중 택일 (붙임#1 참조) - 단, 기존 kt혼합형 가입자는 DC형으로만 전환가능 	
법정 중도인출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 주택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 목적의 전세, 임차보증금 부담하는 경우(1회限) - 주택구입, 전세, 임차보증금의 경우 사유발생일 1개월 이내 신청 가능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로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근로소득의 12.5%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가입자가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 중도인출 세부기준 및 대상여부는 해당 금융기관으로 문의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이 희망하는 금융기관에 직접 신청 (회사로 신청 불가) - 퇴직연금 전환신청서[양식#1] 및 중도인출 증빙서류[붙임#1] 제출 ※ 금융기관별 신청경로(대면/비대면) 및 담당자 연락처는 [붙임#1] 참조 	
전환기준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3.12.31일 (퇴직금 산정 기준일) 	
DC전환 이후 퇴직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를 익년도 1월말 DC계좌로 납입 - e.g. 2023.12.31일 기준 전환 이후, 2024년 임금총액의 1/12를 2025년 1월말에 납입 	
금융기관 (25)	보험(7)	삼성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 신한생명, 한화생명, 삼성화재, IBK연금보험
	은행(9)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증권(9)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KB증권, NH투자증권, 대신증권, 한화투자증권

【붙임#1】

□ 중도인출 증빙서류

- 증빙서류는 중도인출신청일로부터 **한달 이내** 발급 또는 작성분만 인정
- '퇴직연금가입확인서' 발급은 삼성생명으로 요청 ☎1588-3115>1

신청사유	증빙 서류	발급처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주민센터, 온라인(민원24)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및 등기부등본 ▪ 매입 주택의 등기부등본 (잔금등기일 이후 신청시만 필요)	주민센터, 온라인(민원24)
	▪ 무주택서약서	가입 금융기관
	▪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무주택자의 전세,임차보증금 부담	▪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주민센터, 온라인(민원24)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및 등기부등본	주민센터, 온라인(민원24)
	▪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6개월이상) ▪ 의료비 영수증	병원
	▪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총급여액 12.5% 초과 확인)	ERP->증명서발급
	▪ 부양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온라인(민원24)
가입자가 회생절차개시 결정 받은 경우	▪ 법원결정문 또는 확정증명원 (최근5년 이내)	법원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파산선고문(최근5년 이내)	법원

□ 중도인출 Q&A

[공통]

Q1.	중도인출 신청서에 회사의 인감 날인을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하나요?
A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닙니다. 중도인출 신청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시면, 금융기관에서 회사로 날인 요청하므로 임직원 개인이 회사에 날인을 요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 금융기관으로 퇴직연금 전환신청서 및 중도인출 증빙서류만 제출하시면 모든 신청 절차는 마무리되며, 중도인출 적격/부적격 여부는 금융기관에서 서류 확인 후 안내드립니다.
Q2.	중도인출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나요?
A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RP>HR>개인업무>급여>조회>퇴직금>예상액 조회' 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다만, 시스템에 서 일괄 추정한 금액이므로 최종 DC전환금액과는 차이가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Q3.	부분 인출도 가능한가요?
A3.	▪ 네, 가능합니다.
Q4.	비율혼합형(99:1)에서 kt혼합형(DC+DB)으로 전환 시에도 퇴직급여의 1%는 DC로 계속 적립되나요?
A4.	▪ 네, kt혼합형 전환 이후에 적립된 퇴직급여의 1%는 DC로 계속 적립됩니다.
Q5.	중도인출 이후에 사유가 된다면 다시 인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A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 인출 이후 다시 인출 신청하는 시점에 동일한 사유에 대한 지위가 유지된다면 가능합니다. (단, 인출 사유 중 전세 및 임차보증금은 재직 중 1회만 신청 가능) ▪ 예를 들면, 주택을 분양 받아 계약금을 납부할 때 중도인출을 하고, 잔금 납부시까지 다시 적립된 퇴직금에 대해 인출 신청할 경우 여전히 무주택자 지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인출 가능합니다. 장기요양의 경우도 요양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되어 다시 인출을 해야 한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최초 인출시와 동일하게 서류 일체를 제출해야 합니다.
Q6.	중도인출 이후 언제 금융기관 변경이 가능한가요?
A6.	▪ 금융기관 변경은 연 2회 (6월, 12월) 가능합니다.

[주택구입]

Q1.	중도인출 신청 시점에 등기가 완료되었다면 인출이 불가한가요?
A1.	▪ 네, 중도인출 신청 시점에 등기가 완료되어 있으면 유주택자의 지위에 해당하므로 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
Q2.	부부가 공동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도 가능한가요?
A2.	▪ 네, 가능합니다. 부부 사원의 경우도 각각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주택구입이나 분양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 주택을 신축해도 자격이 되나요?
A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 주택 신축도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무주택서약서 ② 현거주지 등기부등본 ③ 주민등록등본 ④ 세목별 과세증명서 ⑤ 신축 주택 설계서 ⑥ 공사계약서 (단, 신축 건물의 용도가 “거주용 주택”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장기요양]

Q1.	중도인출 신청 시 인정되는 의료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요?
A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의원, 치과, 한의원, 조산원·산후조리원 등에 진찰·치료, 요양 등을 위하여 지급한 비용 ▪ 장애인 보장구 및 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의 구입·임차비, 노인장기요양급여 ▪ 산후조리비, 안경·콘택트렌즈(1인당 50만원 한도) 및 보청기 구입비용 <p>※ 단, 미용·성형수술을 위해 지출한 비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미포함이며, 실손의료보험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의료비 총액에서 제외합니다.</p>

Q2. **중도인출 신청 시점 이전에 지출한 의료비만 합산하는지요?**

- A2.
 - 의료비는 중도인출 신청 시점 직전 1년 동안 지출된 의료비와 중도인출 신청 시점에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를 합산합니다.
 - 이때,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란 중도인출 시점에는 아직 지출하지 않았지만,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를 뜻합니다.

Q3. **중도인출 신청자의 연간 임금총액 산출기준과 증빙자료는 어떻게 되나요?**

- A3.
 - 연간 임금총액은 직전년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 휴직기간이 포함된 경우, 직전년도 1년의 기간 중 휴직기간이 아닌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과 휴직기간에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을 합산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산정됩니다.

Q4. **장기요양의 경우,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에 꼭 “향후 6개월 이상”이라는 문구가 들어있어야 하나요? 내용에 추가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 A4.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는 신청 시점 한 달 이내의 작성분 이어야 하며, “향후 6개월 이상”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최근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6개월 이상”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내용이 실질적인 요양이나 치료가 아닌 “추적 관찰” 등으로 표현되면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5. **장기요양 사유로 인출신청을 할 경우, 부양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대상자		생계요건	나이요건
본인		-	-
배우자		동거여부 불문	-
A5. 기타 부양 가족	직계비속·입양자	주민등록표상의 동거 (단, 학업·요양 등의 일시퇴거 또는 직계존속의 주거형편상 별거도 동거가족으로 봄)	만 20세 이하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만20세 이하, 만60세 이상
	기초수급자		-
	위탁아동		만 18세 미만

※ 단, 장애인의 경우 나이제한 없음
부양가족에 장인, 장모 모두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증빙 필수)

[개인회생, 파산]

Q1. **개인신용회복 절차 진행중인 경우도 중도인출 가능한가요?**

- A1. **아니요, 회생절차 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 시에만 인출 가능합니다.**

□ 퇴직연금제도 비교 (DC형 vs kt혼합형)

구분	DC형	kt혼합형 (과거분 DC형 + 미래분 DB형)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직원이 개설한 퇴직연금 계좌로 지급(매년 중간정산) ▪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상품을 직원이 직접 선택/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C형과 DB형의 두 제도를 혼합 ▪ 전환시점 기준 이전 퇴직금은 DC형으로 전환하여 개인이 운용 ▪ 전환시점 기준 이후 최종 퇴직금은 퇴직 전 평균임금과 근속년수에 의해 결정
퇴직급여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상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C형 :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상이 ▪ DB형 : 평균임금 x 근속년수 - 전환 이후부터 근속년수 새로이 기산
운용 Ris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부담 ※ 운용손실 책임을 개인이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C형 : 개인 부담 ▪ DB형 : 회사 부담
중도인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 중도인출 사유 충족 시 수시 인출 신청 가능 - 누적 운용 DC 금액 인출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 중도인출 사유 충족 시 수시 인출 신청 가능 - DC형 운용금액 인출가능 - DB형 적립 금액은 인출불가
제도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B형 및 kt혼합형으로 환원 불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B형으로 환원 불가능 ▪ DC형으로만 전환가능

□ 제도전환 신청경로

구분	비대면 (e-mail/FAX)	대면 (직접방문)
보험	가능	가능
은행	불가	
증권	가능 (단, 하나금융투자는 직접방문만 가능)	

※ 제출서류 및 상세 신청방법은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